www.samil.com

# *Tax News Flash*

## OECD 가 발표한 2014 BEPS 이행계획 관련 결과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October 2, 2014*

지난 9월 16일 (Paris 시간) OECD는 그간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논의를 바탕으로 12개 action items 중 다음과 같은 7개 items에 대해 OECD와 G20국가들이 동의하고 합의한 2014 결과물을 발표하였고, 동 내용은 9월 19일 ~ 21일 호주 케언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합의, 승인되었습니다.

Action #1 디지털 경제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문제 대응
Action #2 혼성불일치 (Hybrid Mismatch)효과 중화
Action #5 투명성과 실질을 고려한 유해조세제도 대응
Action #6 조세조약 남용 방지
Action#8 무형자산의 이전가격적인 측면에 대한 가이드라인
Action #13 이전가격문서화와 국가별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Action #15 양자간 조세조약을 수정하기 위한 다자간 협약 개발

각 항목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pwc

SAMIL | 삼일회계법인

## 디지털 경제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문제 대응 **(Action #1)**

###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디지털 경제환경 하에서 등장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주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한 BEPS 위험 또한 증대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경제를 구분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세무규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과 디지털 경제하에서 BEPS 위험을 악화시키는 주요 특성과 새로운 business model 을 확인하면서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BEPS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BEPS 프로젝트들(Action3 CFC rule, Action7 고정사업장 회피, Action8~10 이전가격 등)과 연계하여 대응하여야 점을 강조하였음.

또한, 디지털 경제환경하에서의 BEPS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직접세 및 간접세 측면에서의 대안을 제시하였음.

- 직접세 부분의 대안
  - 현행 고정사업장 적용의 예외규정 (예비적, 보조적 활동 규정)에 대한 수정
  - 비물리적인 디지털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디지털 실재 (digital presence)의 위치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
  - 기존 고정사업장의 대안으로 가상 고정사업장 (virtual PE) 개념의 도입
  - 디지털 재화/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도입
  - Bandwidth 또는 Bit tax 의 도입

□

- 간접세**(VAT)** 부분의 대안
  - 수입절차 및 VAT 징수처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수입 물품에 대한 간접세 면제 기준을 하향조정
  - 디지털 재화/서비스의 판매자에 대해 VAT 징수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이러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최종 평가나 채택은 현시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B2C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문제는 2015 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15 년 말까지 다른 BEPS 프로젝트의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BEPS 이슈에 대한 검토를 계속할 것임을 밝히고 있음.

### 시사점

디지털 경제환경하에서의 BEPS 위험에 대한 OECD 차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에 - 유럽(2015 년 1 월부터 시행)이나 우리나라 (법 개정시 2015 년 7 월 시행 예정)에서는 디지털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디지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개별 국가에서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련 규정의 변화와 현황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혼성불일치 (Hybrid Mismatch)효과 중화 (Action #2)

### 주요내용

혼성불일치이란 두 국가에서의 세무 처리상의 불일치 (하나의 비용을 이중으로 공제받거나, 지급지국에서 비용 공제되지만 수취국에서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결과)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음. 이러한 혼성불일치를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거래동기나 목적에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아래 표와 같은 지급지국과 수취국간의 주된 규정과 보조적 규정을 제안하고 있음. 일환으로 수취되는 소득이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이 분류될 것으로 보임.

.

| 구분 | 혼성요소 | 불일치 유형 (*) | 제안규정 | |
|---|---|---|---|---|
| | | | 주된 규정 | 보조적 규정 |
| **Hybrid Financial Instruments & Transfers** | 금융상품 특성상 발생하는 혼성불일치 | D/NI | 지급자 국가에서 비용공제 부인 | 수취자 국가 소득에 포함 |
| **Hybrid entity payments** | 법인 또는 계약 특성상 발생하는 혼성불일치 | D/NI | 지급자 국가에서 비용공제 부인 | 수취자 국가 소득에 포함 |
| | | DD | 투자자 국가에서 비용공제 부인 | 자회사 국가에서 비용공제 부인 |
| **Reverse hybrids** | 법인 특성상 수령자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하는 혼성불일치 | D/NI | 투자자 국가에서 소득에 포함<br>중간국가에서 투자자 통제 | 지급자 국가에서 비용공제 부인 |
| **Imported mismatches** | 혼성불일치 계약 하에서 발생한 지출이 상계 처리 | | Anti-Hybrid Rule 제정 (CFC rule 등 제정) | |

(*) D: Deduction (비용인정), NI: No Inclusion (과세소득 불포함), DD: Double Deduction (이중공제)

이와 관련하여 OECD 와 G20 는 구체적인 실행시기에 대해 추가 논의할 계획이며, 2015 년 9 월까지 해설서나 지침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임.

### 시사점

혼성불일치에 대한 OEDC 의 규제 움직임에 발맞춰 많은 국가들이 혼성불일치를 규제하기 위한 이자비용 등의 손금산입 규정을 이미 개정했거나 개정할 계획임. 따라서, 혼성불일치를 이용한 거래구조나 금융상품 등을 활용했거나, cross-border M&A 등을 통해 해외업체 등을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과거 거래나 structure 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투명성과 실질을 고려한 유해조세제도 대응 **(Action #5)**

### 주요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OECD 회원국가의 조세제도 중 유해조세제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향후 비회원국가의 유해조세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임.

OECD 회원국의 제도 중 유해조세제도로 이번에 확정된 제도는 없었으나, 특히, 무형자산 관련한 조세특례 (patent box regime 등)에 대해서는 유해조세제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인 실질적 활동 (substantial activity)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에 대한 추가 검토 후 유해조세제도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임.

이번 보고서에서는, 특정 납세자에게만 주어지는 조세특례 (e.g. 이전가격 사전합의 (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세법해석 사전답변 (Advance ruling) 등)에 대해서는 정보교환 의무화 (compulsory spontaneous information exchange)를 통해 관계당사국 간에 해당 납세자정보, 조세특례 내용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방안은 추가논의를 거쳐 2015 년 Progress Report 에 반영할 계획임.

향후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유해조세제도에 대한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며, 특히, 무형자산 관련한 조세특례 뿐만 아니라 다른 조세특례와 관련해서도 실질적 활동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 시사점

유해조세제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세제도는 폐지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정국가에서 회사가 향유하는 조세혜택이 유해조세제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모니터하고 거래구조의 변경 등을 통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정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에 대한 정보교환 의무화 대상에 (쌍방 또는 일방) APA 가 포함돼 있으므로 회사가 체결하는 일방 APA 도 상대방국가에 그 내용이 내용이 공유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 조세조약 남용 방지 **(Action #6)**

### 주요내용

조세조약 체약국들은 조세조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조약의 제목과 서문에 조세조약은 이중비과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권고함.

또한, 조세조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등 다수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세조약혜택제한조항 (LoB, Limitation of Benefit)" (특정한 객관적 요건을 만족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에게만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하는 조항) 과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주된 목적 판단 조항 (PPT, Principal Purpose Test)"을 적절히 활용하여 최소한의 보호장치 (minimum level of protection)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당초 LoB 조항과 PPT 조항 모두를 반영할 것을 권고했던 입장에서 i) LoB 조항과 PPT 조항을 모두 반영하거나, ii) PPT 조항 만 반영하거나, iii) LoB 조항과 제한적으로 PPT 조항을 반영하는 것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다소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함.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조세조약혜택의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초안과는 달리 파생적 혜택(Derivative benefit)을 인정함. 즉, 제 3 국의 법인을 통해 투자했을 지라도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직접 타방 체약국에 투자했을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인정함.. (제 3 국 법인이 7 명 미만의 equivalent beneficiary 에 의해 직/간접으로 소유되고, non-equivalent beneficiary 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총소득의 50%미만인 경우에 한함.)

향후 OECD 모델조세조약 상의 구체적인 문구나 commentary 에서 반영할 구체적인 문구는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며,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CIV, 집합투자기구), Non-CIV 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거쳐 2015 년 9 월까지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임.

## 양자간 조세조약을 보완하기 위한 다자간 협약 개발 **(Action #15)**

### 주요내용

BEPS 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자간 조세협약의 재협상을 통한 방식으로는 BEPS 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OECD 는 BEPS 프로젝트의 시작단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OECD 는 BEPS 프로젝트의 과정에서 개발되는 다양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다자간 협약의 체결을 제안하였음.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다자간 협약이 내포하고 있는 기술적, 실무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자간 협약을 통한 대처방안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 법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임을 확인하였음. 다만, 얼마나 많은 국가가 이러한 다자간 협약에 참여할 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미지수임.

다자간협약의 협상과 개발을 위해 2015 년 1 월 , OECD 및 G20 차원에서 국제회의를 구성할 계획이며 동 다자간협약은 BEPS 관련한 각 국가로부터 각국의 세법 개정에 대한 확약을 받거나, 국가별 보고양식 (county by country template) 교환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전가격문서화와 국가별 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Action #13)**

### 주요내용

이번에 발표된 BEPS 결과물 중 Action 13 에 대한 보고서는 다국적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현재 OECD 이전가격지침의 Chapter V(문서화, Documentation)를 대체할 예정임.. 동 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이 정상가격원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면서 Global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TPD”)을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기준(Framework)을 제시하는 한편,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세무위험진단 (Risk Assessment)과 이전가격조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Action 13 은 다국적기업이 아래와 같은 3 단계에 의한 Documentation(문서화)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Master File: 다국적기업의 모든 계열사들에게 관련된 특정 정보를 포함 (예: 조직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을 포함한 이전가격정책, 자금거래, 연결재무자료 및 APA 등)

- Local File: 해당국가의 납세자에게 중요한 국제거래 정보를 포함 (예: 현지법인의 조직구조, 사업내용, 사업전략 등 주요정보,주요 국제거래의 내용 및 계약서, 기능분석, 정상가격산출방법, 국제거래와 관련된 APA 승인서 사본 등)
- Country-by-Country ("CbC") Report: 다국적기업의 소득, 납부세액, 경제활동지표 등의 Global Allocation 에 대한 high-level data 를 포함

상기의 3 단계에 의한 Documentation 을 실행하기 위하여 Action 13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부분들을 제안함.

- TP Planning: 정상가격을 적용하기 위하여 거래시점에 사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결정한 정상가격을 적용하고, 세무조정 시 정상가격여부를 확인할 것을 제안
- 준비기한 (Time frame): Mater File 과 Local File 은 세무신고 기한 내에 준비하되, CbC report 는 실무 상 결산 소요 시일 등을 고려하여 모회사의 회계연도 종료 후 1 년 내로 제안
- 중요성 (Materiality): 각국에서 Master file 과 Local file 에 대한 중요성기준을 정할 것을 제안
- 동기화 여부: 상기의 세가지 보고서는 매년 작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비교가능회사는 3 년마다 업데이트 가능한 것으로 제안
- 언어 (Language):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제안
-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과세당국은 비밀정보 또는 민감한 상업정보가 노출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함.

참고로, 브라질,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는 CbC Report 에 로열티, 이자, 서비스 거래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OECD 에서 추가검토를 할 예정임. 또한, OECD 는 아직 Mater file 과 CbC Report 를 모든 국가들 간에 공유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조세조약에 의한 정보교환에 의하여서만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예정임.. 그리고, OECD 는 3 단계 문서화의 실시와 관련하여 각국 세법에 반영, 실시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시사점

많은 논란이 되었던 CbC Report 는 초안에 비하여 간소화되고 각국의 세법에 의한 도입시기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는 다국적기업들이 3 단계에 의한 Documentation 을 준비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다국적기업들은 아래와 같은 부분을 염두에 두어 Action 13 의 시행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합리적인 이전가격정책의 수립: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이전가격정책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3 단계에 의한 Documentation 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대비로 여겨짐. 특히, 신규 국제거래 발생 시 정상가격에 대한 TP Planning 과 사후적으로 각 해외법인이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즉, 정상가격 해당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전가격 조정과정의 수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3 단계 Documentation 에 대한 준비: 3 단계 Documentation 이 각국에서 세법에 의하여 도입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본사와 각 해외법인에서 Master File 및 Local File 을 작성하는 실무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재의 Local TPD 가 본사의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작성되는지 여부를 본사에서 검토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전가격분쟁에 대한 대비: 향후에 발생 가능한 이전가격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앞서 설명한 합리적인 이전가격정책의 수립과 Documentation 과정은 필수적이며, 추가적으로 국제거래금액이 중요하고 공격적인 이전가격환경을 가진 국가에 소재한 해외법인과는 APA 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이전가격위험과 분쟁에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기준 (Action #8)

### 주요내용

Action 8 은 OECD 이전가격지침의 Chapter VI(Special Considerations for Intangible Property)를 대체할 예정이며, 전체적으로 기존의 규정을 좀더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음. 참고로, Action 8 의 보고서는 BEPS 의 다른 Project 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상당부분이 초안상태이며, 추후 지속적으로 보완될 예정임.
기존의 OECD 이전가격지침과 다르거나 추가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무형자산 관련 용어 정의 명확화: 무형자산(Intangibles)의 정의를 신설하고, 'Marketing intangibles'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Unique and valuable intangibles'의 정의를 신설하여 무형자산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있음.

- 무형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명확화: 법적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경제적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에 대한 경제적 보상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무형자산 거래 시 계약상 권리 또는 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 보다 실질적인 기능상 가치 창출( Functional value creation) 여부로 보상범위를 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또한,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활용 과정에서 중요한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자금조달을 포함한 필요한 자산을 제공하며 관련 위험을 부담해야 무형자산의 사용에 따라 기대되는 이익 (Anticipated return)을 받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무형자산 정상가격산출방법: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기타 방법에 가치평가기법(Valuation technique, 예컨대 DCF( 현금흐름 할인법, Discounted Cash Flow 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면서, DCF 적용의 핵심은 재무예측자료의 정확성과 성장률에 대한 가정임을 명확히 함. 한편, 경험칙(Rule of thumb)은 기타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무형자산거래 시 적절한 가치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함.

- 기타 무형자산의 정상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Location savings and other local market features', 'Assembled workforce', 'MNE group synergies' 등 무형자산의 정의에 속하지 않지만, 특수관계거래의 정상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향후 정상가격분석에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무형자산거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추가개념: 사전수익(ex-ante returns)과 사후수익(ex-post returns)을 구별하여, 다국적기업 계열사들 간에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활용으로부터 발생한 손익은 원칙상 사전적으로 산정하되, 예상치 못하게 사후적으로 발생한 손익의 경우 관련 위험을 지배하고 관리하며 실제 부담한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사점

Action 8 은 아직 Draft 상태이나,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발생하는 제반 이슈들을 명확화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음.. 이는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고 향후에 발생 가능한 분쟁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많은 다국적기업들의 무형자산과 관련된 Planning 에 대하여 현재 경제적 실재성 (Economic substance)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 과세당국의 중대한 문제제기 유발에 대한예상이 가능하며, 따라서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정책 (소유권, 연구개발 또는 마케팅, 보호 등)의 적절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결론

이번에 발표된 7 가지 action 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OECD 는 전체 BEPS 프로젝트를 광범위한 국가들간의 동의를 이끌어냄으로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BEPS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경제발전의 중요한 열쇠인 국제거래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조세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OECD 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BEPS 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큰 변화 흐름이 이미 시작되었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BEPS 프로젝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BEPS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 OECD 에서 제안하고 있는 조치들을 보다 실행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납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향후 실행단계에게 추가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삼일회계법인 BEPS 전용 사이트
http://www.pwc.com/kr/ko/tax/oecd_beps.jhtml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에 대해 G20 정상회의 중심의 많은 논의와 유명 다국적기업들의 공격적인 절세 및 국제조세 조세회피 기법에 대한 언론과 일반대중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OECD 는 문제가 제기된 국제조세 규범에 대한 전반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BEPS Action Plan 을 발표하였으며, G20 재무장관들은 OECD Action Plan 에 포함된 15 개 실행 계획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BEPS 는 최근 국제조세 분야의 최대 화두로 OECD 및 주요 국가의 BEPS 동향은 해외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기업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홈페이지의 BEPS 전용 사이트를 통해 BEPS 관련 국내외 최신 동향 및 보고서와 간행물, 동영상 webcast 등 최신자료와 OECD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Contacts


*국제조세*

이상도
709-0288
sdlee@samil.com

김성영
709-4752
sykim@samil.com

김상운
709-0789
swkim@samil.com

이동복
709-4768
dongblee@samil.com

신현창
709-7904
hcshin@samil.com

*조세불복*
조남복
709-0501
njjo@samil.com

*내국세*

주정일
709-0722
jjjoo@samil.com

오연관
709-0342
ygoh@samil.com

박승선
709-0621
sspark@samil.com

황철진
709-0759
hcj@samil.com

정찬우
709-0692
cwchung@samil.com

이영신
709-4756
yslee@samil.com

정민수
709-0638
minsjung@samil.com

김진호
709-0661
jhokim@samil.com

정복석
709-0914
bsjung@samil.com

*이전가격 및 국제통상*
이희태
3781-9083
htlee@samil.com

헨리안
3781-2594
henryan@samil.com

전원엽
3781-2599
wychon@samil.com
조정환
709-8895
jwhancho@samil.com

*해외파견세무*
정연성
709-0538
yschung@samil.com

*상속증여 및 주식변동*
이현종
709-6459
hyunjonglee@samil.com

*금융세무*
윤인희
709-0542
ihyun@samil.com

전한준
3781-3489
hjchon@samil.com

*글로벌 서비스*
이중현
709-0598
alexlee@samil.com

김주덕
709-0707
michaelkim@samil.com

*삼일조세정책연구소*
송상근
709-0559
sksong@samil.com


본 자료의 내용은 고객에게 관심 있을 만한 사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로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법 및 관계 법령 관련 영향이나 적용은 관련된 특정 사실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삼일회계법인의 상기 전문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2014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roces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4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